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9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백혜련·조정식·김기표

박지원 • 전진숙 • 이수진

김준혁 • 이강일 • 김남희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발생함.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

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음.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및 제57조제4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10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법」 제844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제844조의"를 "제844조제1항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생 략)	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민법」 제844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		
	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		
	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아니		
	<u>할 수 있다.</u>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		
한 인지) ① ~ ③ (생 략)	한 인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			
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			
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	1		
법」 <u>제844조의</u> 친생자 추정	제844조제1항의		
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